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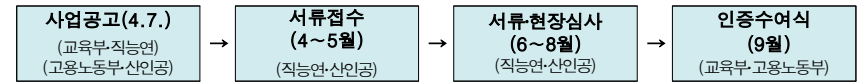
보도자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4. 7.(목) 06:00 (지면) 2022. 4. 7.(목) 석간	배포 일시 2022. 4. 6.(수) 15:30		
담당 부서 <총괄>	산학협력정책관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구현규 (044-203-6838) 담당자 사무관 조예림 (044-203-6842)
<h2 style="margin: 0;">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h2> <p style="margin: 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p>			

주요 내용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4월 7일(목)~5월 31일(화)
- 우수기관에 3년간 유효한 인증 수여,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부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4월 7일(목) 공고한다.
 -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 * www.hrd4u.or.kr 참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인증했다.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접수 및 심사 >

- (신청·접수) 2022. 4. 7.(목) ~ 5. 31.(화) 18:00 까지
 - ※ 접수 마감 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
-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1단계) 및 현장심사(2단계)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 공공부문·대·중소기업 700점 이상, 선취업 후학습 기업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부여



-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 ①정책자금(저금리 우대) 신청자격 부여
 ②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기존 인증혜택과 중복될 경우 가점 합산)
-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전라북도교육청(공공부문)은 2018년 인증 당시 전문 상담을 지원받아 2021년 재인증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Best HRD 인증 로고 >

승리의 월계수 잎과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



-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 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사업 공고문

담당 부서 <총괄>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구현규 (044-203-6838)
		담당자	사무관	조에림 (044-203-684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채수성 (044-202-727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책임자	부서장	정재호 (044-415-5013)
		담당자	연구위원	조성익 (044-415-5101)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책임자	부장	권기승 (052-714-8211)
		담당자	차장	이윤주 (052-714-8212)



붙임

2022년 사업 공고문(안)

교육부 공고 제2022-141호

202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2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7.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 및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① (대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②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나. 신청제한

- (공공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민간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참고1)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⑳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2.1.27.시행)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 기관 및 '18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19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라. 신청방법

- (제출기간) 2022. 4. 7.(목) ~ 5. 31.(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 5부, 관련 증빙서류 1부
- (접수처)

공공부문 접수처

- ▶ 이메일 : best-hrd@krivet.re.kr
- ▶ 우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014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www.krivet.re.kr >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민간부문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방법 : HRD4U사이트 기업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29개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www.hrd4u.or.kr/hrdcert 참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접수마감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
- 제출된 서류는 제출 기간 경과 후 임의 변경 불가
- 메일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폐기 처리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심사기준

가. 심사 기준 ☞(참고2), (참고3)

-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 ①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 ② 인적자원개발(HRD):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나. 심사 시 우대사항

공공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 ①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관
- ② 특성화고 협약체결기관
- ③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 ④ 가족친화 인증기관('19~'21년, 여성가족부)
- ⑤ 일학습병행 참여기관(HRD-net (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관)
- 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 ⑦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기관
- ⑧ 선취업-후학습 우수기관

■ 민간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

분야	가점 사항	비고
대기업 (8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3점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⑥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을검정사업 참여기업	+5점
중소기업 (9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3점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⑥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을검정사업 참여기업 ⑨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5점
선취업 후학습 (11개)	①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가족친화인증기업 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⑥노사문화우수기업 ⑦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사업내자격을검정사업 참여기업 ⑨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2점
	⑩일학습병행 참여기업 ⑪현장실습선도기업	+5점

4. 선정 절차

가. **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

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기준점수 이상인 민간부문 재인증 기업 제외)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선정 기준** :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대기업·중소기업)**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
※ 단, 인적자원관리부문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부문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5. 인증수여 및 인증혜택

가. **인증 수여**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 **(공공부문)** 교육부(총괄),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총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나. **인증 혜택** :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간 동안(3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민간부문)**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 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공 통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정책자금(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중 일자리창출촉진-인재육성부분) 신청자격 부여	선취업-후학습 중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5점)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2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선정	
기 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공 통
	인증기관 사례 홍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다. **탈락기관 컨설팅** : 인증 탈락기관 중 희망기관(공공/민간), 심사결과 하위기관 중 희망기관(공공) 등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현황 진단·개선방안 제시 등 맞춤형 HRD 컨설팅 지원

6. 향후 일정

- 인증기관 심사 : '22년 6~8월
- 인증수여식 개최 : '22년 9월

7.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

- 제출서류 양식 및 사업 세부사항 안내 사이트

-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 (www.krivet.re.kr)
-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 전화 : 044-415-3941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29개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460
서울서부지사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진관동 산 100-23)	03302	02-2024-1752
서울남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당산동)	07225	02-6907-7178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 고개길 135	24408	033-248-850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방동리)	25440	033-650-5743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956
부산남부지사	부산시 남구 신천로 454-18(용당동)	48518	051-620-1933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중앙동)	51519	055-212-7214
경남서부지사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52733	055-791-0714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7 (교동)	44538	052-220-3244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42704	053-580-2314
경북지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36616	054-840-3025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37580	054-230-3227
경북서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39371	054-713-3005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07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16626	031-249-120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11780	031-850-9136
경기동부지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SK코원에너지 45층	13313	031-750-6251
경기남부지사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17561	031-615-9050
경기서부지사	경기 부천시 길주로463번길 69 양지빌딩	14488	032-719-0806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61008	062-970-1765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팔복동)	54852	063-210-9202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조례동)	57948	061-720-8528
전남서부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대양동)	58604	061-288-3319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북지로 19 (도남동)	63220	064-729-0735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35000	042-279-9021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신봉동)	28456	043-279-9015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27	31081	041-620-7615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86 밀레니엄 빌딩 5층 (나성동)	30128	044-410-8024
본부 능력개발기획부	울산 중구 중가로 345	44538	052-714-8212

참고 1 [민간부문] 결격 기준

결격 기준

√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

<< 결격 기준 >>

-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참고 2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심사지표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A. 인적자원관리 (400)	A.1 인사관리 기반 (90)	A.1.1 인사기획 및 전략(40)	A.1.1.1 기관 경영에 근거한 인사관리체계 수립	10		
			A.1.1.2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10		
			A.1.1.3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20		
		A.1.2 인력계획(50)	A.1.2.1 역량모델 계획 수립 및 운영	20		
			A.1.2.2 부서별 인력 수요 조사	20		
			A.1.2.3 다원화된 인사관리 방법	10		
	A.2 인적자원관리 체제 구축과 운영 (140)	A.2.1 채용(40)	A.2.1.1 역량중심 채용	20		
			A.2.1.2 채용 방식의 다양성	20		
		A.2.2 인사평가(20)	A.2.2.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의 정립	20		
			A.2.3 배치 및 인사이동(40)	A.2.3.1 배치이동의 상세 경로 설정	20	
		A.2.3.2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행		20		
		A.2.4 승진(40)	A.2.4.1 개인의 업적 및 역량에 기반한 승진	20		
	A.2.4.2 승진제도의 합리성		20			
	A.3 성과목표 관리 (80)	A.3.1 목표 수립 및 관리(40)	A.3.1.1 조직과 개인 목표의 연계성	10		
			A.3.1.2 설정목표의 공유성	10		
			A.3.1.3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0		
		A.3.2 결과 공개 및 환류(40)	A.3.2.1 성과평가 결과 정보의 공개	20		
	A.3.2.2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		20			
	A.4 역량개발 제도운영 (90)	A.4.1 경력개발 체제(50)	A.4.1.1 역량중심의 경력관리 시행	30		
			A.4.1.2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상체제 시행	20		
		A.4.2 능력개발 인프라(40)	A.4.2.1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 부여	20		
			A.4.2.2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경로의 다양화 노력	20		
	B. 인적자원개발 (600)	B.1 기획 및 인프라 (200)	B.1.1 기획(12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30	
				B.1.1.2 체계적인 인재육성 계획 수립	50	
B.1.1.3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수립				40		
B.1.2 인프라(80)			B.1.2.1 HRM과 HRD의 연계 정도	50		
			B.1.2.2 새로운 교육방식 및 교수기법 도입 노력	B.1.2.2.1	30	
				B.1.2.2.2	30	
B.2 운영 (300)		B.2.1 학습조직화 (100)	B.2.1.1 현업부서 내 교육학습 실행 정도	40		
			B.2.1.2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	30		
			B.2.1.3 집합교육 이외의 학습활동 정도	30		
		B.2.2 교육훈련 참여 및 자율성(80)	B.2.2.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40		
			B.2.2.2 개인 스스로 교육학습 실행정도	40		
			B.2.3 인적자원개발 투자(120)	B.2.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 비용	60	
B.2.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		60				
B.3 평가 (100)		B.3.1 결과 및 피드백 (100)	B.3.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계획 실적	50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B.3.1.3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상과에 대한 기여도	20		
		합 계				1,000

참고 3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심사지표

○ 대기업 부문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비고
A. 인적자원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50)	A.1.1 인사기획(60)	A.1.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정성
			A.1.1.2 인사계획에 구성원 참여 수준	20	정성
			A.1.1.3 인사에 관한 정부 시책 반영의 적절성	10	정량
		A.1.2 인프라 구축 (90)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20	정성
			A.1.2.2 선발/평가시 능력중심 역량측정 도구개발 및 활용 수준	30	정성
			A.1.2.3 e-HRM시스템 구축정도(e-HR 통합시스템 포함)	20	정성
	A.1.2.4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A.1.2.4.1	20	정성	
		A.2.1 채용(90)	A.2.1.1 부서별 능력중심 인력 수요조사의 적절성	30	정성
			A.2.1.2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30	정성
	A.2.1.3 채용인력 유지율		30	정량	
	A.2.2 직원관리(70)	A.2.2.1 능력중심 핵심인재관리 수준	20	정성	
		A.2.2.2 능력중심의 인재 육성경로 활용 수준	30	정성	
		A.2.2.3 퇴직지원제도의 적절성	20	정성	
	A.3 평가보상 (90)	A.3.1 성과평가(60)	A.3.1.1 평가정보 공개 및 피드백 정도	20	정성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정성
			A.3.1.3 평가결과에 따른 역량개발 연계정도	10	정성
		A.3.2 승진보상(30)	A.3.2.1 능력중심 승진제도의 공정성	10	정성
			A.3.2.2 성과평가에 기반한 보상제 시행	10	정성
			A.3.2.3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10	정성
	B.1 기획 인프라 (300)	B.1.1 HRD기획(12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40	정성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30	정성
			B.1.1.3 중장기 능력중심 인재육성체계 수립의 적절성	30	정성
			B.1.1.4 정기적인 HRD 요구 분석 및 반영 수준	20	정성
			B.1.2 인프라 구축(120)	B.1.2.1 HRM과 HRD 연계성	30
B.1.2.2 온 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정성
B.1.2.3 HRD 조직/담당자 활용 수준		B.1.2.3.1	20	정성	
		B.1.2.3.2	30	정성	
B.1.2.4 HRD시스템 구축정도		B.1.2.4.1	20	정성	
		B.1.2.4.2	30	정성	
B.2 운영 (200)		B.2.1 학습조직화(60)	B.2.1.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30	정량
			B.2.1.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30	정량
	B.2.1.3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30	정성	
	B.2.2 교육 프로그램(90)	B.2.2.1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30	정성	
		B.2.2.2 능력중심의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도	30	정성	
		B.2.2.3 강사진문성 및 관리 수준	10	정성	
B.2.3 경력개발(50)	B.2.3.1 구성원의 교육훈련 참여 자율성	30	정성		
	B.2.3.2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20	정성		
	B.2.3.3 능력중심의 경력설계지원 수준	30	정성		
B.3 결과 (100)	B.3.1 평가 및 피드백(60)	B.3.1.1 체계적인 평가방법의 활용 수준	30	정성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효과	30	정성	
		B.3.1.3 교육목표 대비 실적	20	정량	
	B.3.2 기여도(40)	B.3.2.1 교육목표 대비 실적	20	정량	
		B.3.2.2 인적자원개발의 조직경영상과에 대한 기여도	20	정성	
		합 계			

○ 중소기업 부문

부문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비고	
A. 인적자원관리 (400점)	A.1 기획 인프라 (140)	A.1.1 인사계획(50)	A11 회사비전전략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계획 수립의 적절성	50	정성	
		A.1.2 인프라구축(90)	A.1.2.1 인사 관련 사내규정 활용 수준	30	정성	
			A.1.2.2 능력중심의 선발/평가기준 정립 수준	30	정성	
			A.1.2.3 노사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정도	30	정성	
	A.2 활용 (140)	A.2.1 채용(90)	A.2.1.1 능력중심 채용절차의 적절성	40	정성	
		A.2.2 직원관리(50)	A.2.1.2 채용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	50	정성	
	A.3 평가보상 (120)	A.3.1 성과평가(60)	A.3.1.1 성과평가체계의 적절성	30	정성	
			A.3.1.2 조직의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연계정도	30	정성	
		A.3.2 승진보상(60)	A321 능력중심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 및 보상제 시행 수준	30	정성	
			A.3.2.2 복리후생제도 다양성	30	정성	
	B. 인적자원개발 (600점)	B.1 기획 인프라 (300)	B.1.1 HRD기획(140)	B.1.1.1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CEO의 의지	60	정성
				B.1.1.2 HRD 활동과 기업 비전/미션/사업전략의 연계성	40	정성
B.1.1.3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구성원 공유 수준				40	정성	
B.1.2 인프라 구축(80)			B.1.2.1 교육훈련결과와 인사사고과의 연계성	30	정성	
			B.1.2.2 온-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활용 수준	20	정성	
			B.1.2.3 HRD 담당자 활용 수준	30	정성	
B.1.3 인적자원 개발 투자(80)		B.1.3.1 1인당 연간 교육훈련비용	40	정량		
		B.1.3.2 1인당 연간 교육훈련시간	40	정량		
B.2 운영 (200)		B.2.1 학습 조직화(80)	B.2.1.1 학습조직 활동 설계의 체계성	40	정성	
			B.2.1.2 학습조직 활동의 활성화 수준	40	정성	
		B.2.2 교육 프로그램(80)	B.2.2.1 능력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정도	40	정성	
B.2.2.2 학습활동 모니터링 및 촉진 수준			40	정성		
B.2.3 경력개발(40)	B.2.3.1 능력중심 인재 육성경로의 체계성	40	정성			
B.3 결과 (100)	B.3.1 평가 및 피드백(60)	B.3.1.1 교육훈련 평가기준 수립 여부 및 실행 수준	30	정성		
		B.3.1.2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노력	30	정성		
	B.3.2 기여도(40)	B3.2.1 인적자원개발의 조직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도	40	정성		
합 계				1,000		

○ 선취업후학습기업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지표	배점	지표성격
고용 (30)	1.1 선취업 근로자 비중	10	정량
	1.2 선취업 근로자 고용유지율	7	정량
	1.3 선취업 근로자 고용증가율	6	정량
	1.4 고졸 채용 활성화 노력	7	정성
지원 (20)	2.1 CEO의 의지	8	정성
	2.2 후학습률	7	정량
	2.3 근로자의 후학습 지원노력	5	정성
인사보상 (20)	3.1 후학습 후 인사 우대노력	12	정성
	3.2 후학습 후 보상 노력	8	정성
조직문화 (10)	4.1 선취업-후학습 지원분위기	5	정성
	4.2 고졸취업, 선취업-후학습 관련 직원대표회의 또는 노조와의 협의	5	정성
육성 (10)	5.1 선취업 근로자 육성로드맵 여부	5	정성
	5.2 선취업 근로자 경력관리	5	정성
성과(10)	6.1 선취업-후학습 도입에 따른 기업기여도	5	정성
	6.2 선취업 근로자 직무·조직만족도 향상	5	정성
합계		100	